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54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최수진 · 구자근 · 김은혜
김소희 · 신성범 · 강선영
김예지 · 김태규 · 성일중
최형두 · 송석준 · 이상희
김정재 · 이주영 · 고동진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수익허가 제도상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능력이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자 또는 과거 운영상 문제 이력이 있는 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최고가 낙찰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 각종 운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시설로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수익허가 시 자격제한 근거 또한 부재하여 제도적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체육시설과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재정능력·운영경험·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 원상복구보증 등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사용·수익허가 시 재정능력, 운영경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시 계약이행, 공공요금, 원상복구, 이

용료 반환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9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이행, 공공요금 납부,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 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증금의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관리위탁으로 본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허가) ① (생 락)	제2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 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 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 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 ----- -----. ----- ----- ----- -----.
1. · 2. (생 락)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 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공성, 운 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보 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 을 제한할 수 있다.
<u><신 설></u>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계 약이행, 공공요금 납부, 원상

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다.
